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57
----------	------

2017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성희 의원(찬성자 12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8월 18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성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고, 잠실 야구장과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자 하며,

- '15.7.1 서울시 직제개편 및 '16.2.26 통합 서울특별시체육회 ((구)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 및 (구)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통합) 출범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2조).
-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을 추가하고, 잠실 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및 제8조).
- 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관리담당자를 '체육정책과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5조 및 안 제10조),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예산사항 :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의 6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
- 기타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여 광고권 수입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며, 서울시 직제개편 및 서울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1) 기금의 존속기한

- 2000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고, 2014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음.

2017년 12월 31일부로 5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서울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연장 운용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에서도 존속기한을 넘어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2조와 같이 체육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운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기금 조성 재원

- 조례 제3조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0월 개관 후 넥센 히어로즈가 2년 계약(2016.1. 1. ~ 2018. 12. 31.)으로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남권 돛구장의 광고권 수입이 2016년 29억 원, 2017년 35억 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 또한 출연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례 제3조에서 광고권 수입의 일반회계 출연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의 예측성 증대를 위해 출연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 비율

- 최근 4년간 체육진흥기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순수 사업비가 5개 사업 17억 원이었으나,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이

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에는 평균 22개 사업, 88억 원임.

< 최근 4년간 체육진흥기금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본예산액	2,402	9,423	11,856	10,575
사업비	1,728 (5개 사업)	7,798 (18개 사업)	9,857 (23개 사업)	8,853 (26개 사업)
기본경비	2	10	10	10
여유자금 예치	672	1,615	1,989	1,712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액 중 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수입액의 72.5%(75억 원), 2016년 68.9%(71억 3,500만원), 2017년 74.7%(77억 3,5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3개년도 평균은 72%(74억 5,700만원)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액 및 기금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5	2016	2017
전년도 광고권 수입액	10,350	10,350	10,350
기금 출연금액	7,500	7,135	7,735
기금 출연비율	72.5%	68.9%	74.7%

조례 개정을 전제로 2018년도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및 기금 출연금을 추산한 바에 따르면, 출연비율 60%일 경우 출연금은 86억 8,300만원, 70%일 경우 101억 3,000만원, 80%일 경우 115억 7,700만원임.

<'18년 기금 출연금액 추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 14,471백만원에 대한 출연비율 (잠실야구장 11,008백만원 + 서남권 돔구장 3,463백만원)					
60%	증가액	70%	증가액	80%	증가액
8,683	948	10,130	2,395	11,577	3,842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규정하고, 지출계획이나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사업비와 평균 광고권 수입액 및 출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2018년 기금 출연금액 추산과 비교할 경우, 출연 비율을 60%로 할 경우 출연금이 전년 대비 9억 4,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근 3년 기금 사업 중 야구관련 사업(붙임1.)을 살펴보면 2015년 총 18개 사업 중 야구관련 사업은 5개, 2016년 총 23개 사업 중 야구관련 사업은 5개, 2017년 총 26개 사업 중 야구관련 사업은 6개로 전체적으로 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야구관련 사업은 평균 5개 정도가 편성되므로 광고권 수입금이 늘어나는 만큼 야구관련 사업에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체육진흥 기금 사업 중 야구관련 사업 현황〉

(단위 : 개)

회계연도	2015	2016	2017
전체 사업	18	23	26
야구 사업	5	5	6
기금 예산액 대비 야구사업 비율	44.0%	46.3%	36.6%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2)에 의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제정관리담당관-6571호(2017.6.5.)결과, ‘지출규모 조정 및 기금 수입원 다양화를 통해 기금 총액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듯이 재원 확보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있어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이 아닌 기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4) 직제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관리담당자 등 수정

- 관광체육국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실행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선 6기 2차 조직개편에 따라 2015년 7월 1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분리·신설되었음.

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내 체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체육진흥과(1과1사업소)’를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2과 7팀 1사업소)로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며, 기구·정원규정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15. 5. 14.)했으나, 동 조례

2)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 제5조제4항 중 기금심의위원회 간사(시 체육진흥 담당과장 → 시 체육정책과장)와 제10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체육진흥 담당국장 → 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 기금분임운용관(체육진흥 담당과장 → 체육정책과장)의 수정이 누락된 것을 개정하는 것임.

또한 2010. 9. 27. 개정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회계관직 지정 등)제1항제2호에 의해 기금운용관이 명시된 바, 기금운용관이 담당국장에서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일괄적으로 개정 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것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회계관직 지정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 담당 실·본부·국장**
3. 분임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 담당 과장
4.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 담당 사무관

이와 더불어 2016. 2. 26. 市체육회와 市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2016. 3. 14. 통합된 市체육회의 정관³⁾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비 되었으나 동 조례의 제4조제2호 단체명(가맹경기단체 → 회원종목단체)의 수정이 누락된 것을 개정하는 것임.

3)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제5조(조직) ①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붙임1. 최근 3년간 기금사업 중 야구관련 사업 현황

○ 2015년

※ 야구발전 사업 지출 규모 : 4,150,000천원

- 꿈나무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500,000천원
- 돛구장 야구테마거리 조성 800,000천원
- 노원구 야구장 건립 50,000천원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500,000천원
- 야구장 시설 개·보수 2,300,000천원

※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전입금 7,500,000천원 대비 55.3%

○ 2016년

※ 야구발전 사업 지출 규모 : 5,491,300천원

- 돛야구장 테마거리 조성 632,000천원
- 야구장 시설 개보수 3,059,300천원
- 고교야구개최지원(5개 대회) 100,000천원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 200,000천원
- 노원구 야구장 건립 1,500,000천원

※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전입금 7,134,614천원 대비 76.9%

○ 2017년

※ 야구발전 사업 지출 규모 : 3,872,036천원

- 야구장 시설 개보수 3,180,000천원
- 봉황기 전국고교대회 개최 지원 100,000천원
- WBC대회 붐업을 위한 응원단 지원 25,000천원
- 돛구장 관람 환경 개선 249,000천원
- 꿈나무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천원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118,036천원

※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전입금 7,734,614천원 대비 50.0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를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로 하며,

제4조제2호 중 “가맹경기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체육진흥 담당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잠실야구장의”를 각각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체육진흥 담당국장”을 “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하며, “체육진흥 담당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③ <u>잠실야구장의</u>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p> <p>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p> <p>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u>체육진흥 담당국장</u>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u>체육진흥 담당과장</u>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후략)</p> <p>② (생략)</p>	<p>③ <u>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u> ----- ----- -----.</p> <p>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p> <p>① ----- ----- ----- <u>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u> ----- ----- <u>체육정책과장</u> ----- ----- (후략)</p> <p>② (현행과 같음)</p>